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3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김상욱 · 서범수 · 박준태

조지연 • 박성민 • 박덕흠

최형두 · 김선교 · 서천호

백종헌 • 박충권 • 이상휘

신성범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 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 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

警)·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함(안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등).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순직군경(殉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순 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상군경(公傷軍警)"을 "공상군경(公傷軍警)・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항제1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으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를 각각 "전몰군경,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4·19혁명사망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순직군경"을 각각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순직군경" 을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순직군경"을 각각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을 하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순직군경"을 각각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 로 한다.

제43조의2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또는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	
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순직군경(殉職軍警)</u> : 군인이	5. <u>순직군경(殉職軍警) · 순직소</u>
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u> 방공무원</u>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	
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u>공상군경(公傷軍警)</u> : 군인이	6. <u>공상군경(公傷軍警) · 공상소</u>
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u> 방공무원</u>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 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 된 사람

7. ~ 18. (생략)

② ~ ⑥ (생 략)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 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 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6조 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② (생략)

_
7.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
한 특례) ①
<u>.</u>
1 <u>공상군경·공</u>
<u> 상소방공무원</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증개 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 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19혁 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2. (생략)
- 3. 전몰군경, <u>순직군경</u>, 4·19혁 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특례)	
	· <u>공상군경·공상소</u>
~ 제12조(보상금) 	①
	- <u>공상군경·공상소</u>
	음) - <u>순직군경・순직소</u>

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생략)

② ~ ⑤ (생 략)

제15조(간호수당) ①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19혁명부상자, 공 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 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 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 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 급한다.

② (생략)

-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 족수당을 지급한다.
 - 1.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및 재일학도의용군인
 - 2. <u>전몰군경·순직군경·4·19</u> <u>혁명사망자</u> 및 특별공로순직 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

4	l.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5조(간호수당) ①
·	
_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
-	
-	
_	
_	
_	
(· ② (현행과 같음)
세1	.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	
-	
-	
_	·
1	공상군경·공상소
_	<u> </u>
	<u> </u>
2	2. <u>전몰군경, 순직군경·순직소</u>
	<u>방공무원, 4·19혁명사망자</u>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전몰군경·순직군경·4·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 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 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 에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전상 군경, <u>공상군경</u>, 4·19혁명부상 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 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 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u>순</u>직군 결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0 키민그권 스키그권 스키 2
3. <u>전몰군경, 순직군경·순직소</u>
<u> 방공무원, 4·19혁명사망자</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u>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u>
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
당) ①
0 / &
순직군
경·순직소방공무원

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아니한다.

- 1. (생략)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u>순직군경</u>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 3. (생략)
- ②・③ (생 략)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상군경, <u>공상군경</u>, 무공수 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 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u>순직군경·순직소방공</u>
무원
1. (현행과 같음)
2
<u>순직군경</u>
<u>· 순직소방공무원</u>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1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11/2/조(교육시천 내경자 증) ①
· 1공상군경・공상소
방공무원
<u>001 t</u>

- 2. 전몰군경, <u>순직군경</u>, 4·19혁 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 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3. (생략)
- 4. 전몰군경, <u>순</u>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제매
- ② (생략)
-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 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 다.
- 1. · 2. (생략)
- 3.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 <u>순직군경·순직소</u> <u>방공무원</u>
3
 1.・2. (현행과 같음) 3 <u>공상군경・공상소</u> <u>방공무원</u>

④ (생략)

-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상군경, <u>공상군경</u>, 무공수 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 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 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 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2. 전몰군경, <u>순직군경</u>, 4·19혁 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 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3. (생략)
 - 4. 전몰군경, <u>순직군경</u>,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1 <u>공상군경·공상소</u>
<u> 방공무원</u>
2 <u>순직군경·순직소</u>
<u> 방공무원</u>
3. (현행과 같음)
4 <u>순직군경·순직소</u>
<u>방공무원</u>
5 <u>공상군경·공상소</u>
방공무원
<u>8 6 기 권</u>

②·③ (생 략)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u>공</u>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38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취업에 필요 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u>공상</u> <u>군경</u>, 4·19혁명부상자, 공상공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u>ō</u>
<u>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u>
.
제38조(직업훈련) ①
<u>공상군경·공</u>
<u> 상소방공무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진료) ①공상
<u> 군경 · 공상소방공무원</u>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 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④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 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 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 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 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 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 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상군경·공상</u>
소방공무원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경, <u>공상군경</u> , 4·19혁명부상자,	<u>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u>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	
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철구를 지급한다.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u>공상군</u>	<u>공상군</u>
<u>경</u> ,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	<u>경·공상소방공무원</u>
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	
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	
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제63조(양로지원)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	
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	
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u>공상</u>	<u>공상</u>
<u>군경</u> , 4·19혁명부상자, 공상공	군경·공상소방공무원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	
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

가	없는 기	자(부양	의무자	가 있	10
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	는 부	양
능력	력이 없	는 경우	문 를 기	함한	다)
에	대하여	는 국	가의 '	양로시	설
에스	네 지원	할 수	있다.	이경] 우
국기	1유공지	나의 배	우자는	국기	上
훈투	부장관0] 정하	는 바	에 따	나라
양토	무지원을	을 받게	되는	국기	l 유
공지	나와 함	께 지원]할 수	있다	•

-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
 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전상군경, <u>공상군경</u>, 4·19혁 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 별공로상이자
 - 2. (생략)
 - ② (생 략)
-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 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
<u>.</u>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1 <u>공상군경·공상소</u>
<u> 방공무원</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 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u>공상군경</u>에 준하여 보상한다.

1. • 2. (생략)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u>공상군경</u>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u>공상군경·공상소</u>
<u> 방공무원</u>
1. • 2. (현행과 같음)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
한 보상) 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
직군경 • 순직소방공무원 또는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공상군경·공상</u>
소방공무원